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517081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5. 9. 18.

판결 선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551호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제5공구)를 수급한 수급인인데, 2009. 8. 12. 주식회사 대왕이엔씨(이하 '대왕이엔씨'라 한다)에 위 확장공사 중 2구간의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735,000,000원, 공사기간 2009. 8. 12.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일금 원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조【기본원칙】

1 원고와 대왕이엔씨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2 원고와 대왕이엔씨는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3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대왕이엔씨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1 원고와 대왕이엔씨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1. 대왕이엔씨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대왕이엔씨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5 대왕이엔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1 원고 또는 대왕이엔씨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부도.파산 등 대왕이엔씨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대왕이엔씨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 납부한다.

3 대왕이엔씨는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원고 또는 대왕이엔씨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대왕이엔씨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견적특수조건

5. 계약의 해지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바. 부도.파산 등 대왕이엔씨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때

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체결

1) 대왕이엔씨는 2009. 8. 13.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973,500,000원, 보증기간은 2009. 8. 12.부터 2013. 12. 31.까지,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하는 계약보증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보증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1조(보증책임)

피고는 대왕이엔씨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1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1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및 새로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대왕이엔씨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않다가 2009. 9. 2. 최종부도처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9. 9. 3., 9.7. 및 9. 10. 3차례에 걸쳐 대왕이엔씨에 위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우편이 대왕이엔씨에 도달하였다.

2) 원고는 이후 후속업체를 선정하여 2010. 1. 12. 광혁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23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보증금 지급 청구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왕이엔씨의 부도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09. 9. 1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왕이엔씨의 의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인 대왕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보증채무인 피고의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은 피고가 대왕이엔씨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대왕이엔씨가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무엇보다 채무자인 대왕이엔씨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에 관한 민법의 규정 또는 법리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연상인인 원고와 대왕이엔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왕이엔씨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9. 1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대왕이엔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주채무인 대왕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본질은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부종성의 적용여지가 없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3. 12. 3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94. 1.11. 선고 93다21477 판결,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인 대왕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완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채무도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대왕이엔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1년여에 이르는 기간동안 보상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소멸시효에 관한 일체의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고의 이사건 소제기 이후 갑자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사자료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심사결과를 장기간 회신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황성욱, 판사 박서우